

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9-26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자	거창군수
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등에서 재단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임원 규정 삭제(안 제4조)
- 나. 이사회 규정 삭제(안 제5조)
- 다. 사무국 규정 삭제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·제8조·제9조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·제5조·제6조 「민법」 제40조·제43조
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8. 12. 24.~2019. 1. 14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부터 제6조까지,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4조(임원)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</u> <u>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</u> <u>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.</u> <u>②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</u> <u>받아 취임하되, 거창군수, 거창군의회</u> <u>의장,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</u> <u>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.</u> <u>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·임면 및 그</u> <u>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u>	<삭 제>
<u>제5조(이사회) ① 장학회에는 그 운영</u> <u>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</u> <u>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</u> <u>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</u> <u>③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</u> <u>정관으로 정한다.</u>	<삭 제>
<u>제6조(사무국) ① 장학회에는 장학회</u> <u>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</u> <u>둘 수 있다.</u> <u>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</u> <u>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</u> <u>한다.</u>	<삭 제>
<u>제14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정한</u> <u>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</u> <u>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</u> <u>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</u>	<삭 제>

